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7 선고 2023가단2861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5.

판 결 선 고 2024. 5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건물의 1층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, (ㅂ), (ㅅ), (ㅇ), (ㄴ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8.51㎡ 및 다용도실 (1), (2), (3), (4), (1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.91㎡, 2층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, (ㅂ), (ㅅ), (ㅇ), (ㄴ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8.51㎡, 3층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ㅁ), (ㅂ), (ㅅ), (ㅇ), (ㄴ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8.51㎡을 인도하고,
나. 7,666,410원 및 2023. 9. 1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87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이서윤

별지